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1. 원산지 증명서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6 단위)

마.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바. 원산지 결정 기준

사.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신고

아. 발급 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인장과 함께 제공된 증거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발급 기관의 증명

자. 제 2.6 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차. 송장번호, 출발일, 선박명이나 항공기 편명 그리고 하역항과 같이 탁송물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카.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타. 상품의 수량

파.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2. 원산지 신고서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6 단위)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바. 고유 참조번호

사. 원산지 결정 기준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자. 제 2.6 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카. 상품의 수량

타.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 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